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·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2019. 10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복지정책과]

# 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복지정책과장

『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· 관리 조례』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  - 기금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사회적인 정책 방향에 맞춰 연대보증인 조건을 폐지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  - 연대보증인 조건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.(안 제6조제2항)
 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(안 전반)
-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  - 본 조례안을 2019. 9. 11일부터 10. 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  - 2019. 10. 8일 조례 ·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-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  - 별도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-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 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·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·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12035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19. 10. 18.  
제출자: 달서구청장  
(복지정책과장)

## 1. 개정이유

-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사회적인 정책 방향에 맞춰 연대보증인 조건을 폐지 하고자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연대보증인 조건에 관한 조문 개정(안 제6조의 2)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(안 전반)

## 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9. 9. 11.~10. 1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융자한도 및 이율 등)”을 “(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대부이율”을 “대부이자율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보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 “(대상자 선정통보)”를 “(대상자 선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통보하고”를 “알리고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극히”를 “매우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융자금반환 통보)”를 “(융자금 회수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“알려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융자한도 및 이율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융자금의 <u>대부이율</u>은 연 2퍼센트로 하되, 거치기간 중에는 1퍼센트로 한다.</p>	<p>제5조(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대부이자율</u>----- -----. -----.</p>
<p>제6조(융자금 대부신청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대구광역시 주민 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물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·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융자금 대부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보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대상자 선정통보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<u>통보하고</u>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.</p>	<p>제7조(대상자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알리고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</p>	<p>제9조(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

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융자금의 반환)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

2. ~ 4. (생 략)

제17조(융자금반환 통보)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알려야 -----.

제16조(융자금의 반환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매우 -----  
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융자금 회수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알려야 -----  
-----  
-----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**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소득보장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.

## 참고자료

	보도자료			
금융위원회	보도	2018.10.4.(목) 조간	배포	2018.10.3.(수)

### 제 목 :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.

- ◆ '19.1.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
-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·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, 매 입채권추심업자는 '19.1.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·도 금지

#### 1 추진 배경

□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<sup>\*</sup>하였으나,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

- \* ① 은행 : ('08.6월)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→ ('12.5월)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,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→ ('13.7월)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
- ② 제2금융권(저축은행·상호금융·여전사·보험사) : ('13.7월) 연대보증 폐지 도입

○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여전히 높은 수준

\*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 금융위 이관 후('16.7월)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

< 대형 대부업계[자산 500억원 이상]<sup>\*</sup>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 >

구 분	'15.12말	'16.12말	'17.12말	'18.3말
잔 액(억원)	10,161	10,440	7,889	8,313
건 수(천건)	253	276	126	119

※ 69개사,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전체 대부잔액(연대보증대출 포함)의 83% 이상 차지

⇒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,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,

○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<sup>\*</sup>를 추진

\* 지난 '17.12.17일 발표한 “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”의 후속조치